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0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이연희

이개호 · 강훈식 · 한민수

홍기원 · 김원이 · 김현정

문금주・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 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
	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u>③</u> ~ <u>⑤</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u>⑦</u>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	
무원에게 <u>제4항</u> 을 위반하여 장	<u>제5항</u>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	<u>®</u>
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절차, <u>제3항</u> 에 따른 회수 및	<u>제4항</u>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u>제5</u>	<u>제6항</u> -
<u>항</u> 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7조(과태료) <u><신 설></u>

① (생략)

-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
<u>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u>
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u>④</u> <u>제17조제5항</u>
1.•2. (현행과 같음)
<u>⑤</u> 제1항부터 제4항까지